

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(훈령) 개정(안)

< '25.4.21. 지역인재정책과 >

□ 추진 배경

-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 반영 및 안정적 업무 추진 등을 위해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(이하 '훈령') 정비 필요

□ 검토 대상

- (사업비 지원 범위) 현행 훈령상 RISE사업비 직접 지원 범위는 ¹⁾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등교육법상 학교(이하 '대학'), ²⁾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정한 기관에 한함
 - 따라서 기업 등 그 밖의 기관은 사업 참여만 가능하고 사업비 직접 지원은 불가하여, 대학-기업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

□ 훈령 개정(안) [붙임 1]

- (지원 범위 확대) 대학-기업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
 - 특히,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해서는 지역이 희망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자율성 인정 가능
 - 다만,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의 책무성 확보 및 사업비의 합리적 운용 등을 위한 지역RISE위원회 심의·의결 절차 필요

현행	개정안
제3조(지원 범위 등)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이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	제3조(지원 범위 등) ----- 별표 1----- -----, 다만, 제2조제3호나목의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□ 향후 계획

- 훈령 개정 절차 추진

붙임 1

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지역의 자율성 및 책무성에 기반한 사업비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대학과 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함

2. 주요내용

가. RISE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중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 지역 RISE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 및 책임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 단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'25년 2조 10억원 편성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.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전단 중 "이 규정"을 "별표 1"로 하고, 후단을 삭제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3호나목의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 범위 등)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이 규정</u> 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 <u>이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</u>	제3조(지원 범위 등) ----- 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제2조제3호나목의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
참고1

[별표1] 지원 대상의 범위(제3조)

1.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 학교
2.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호에 따른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지원 대상으로 정한 각 목의 기관 또는 학교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
 - 라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
 - 마. 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 - 바.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 - 사.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
 - 아.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

「농수산대학교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, 「전통문화대학교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」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,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,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,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,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, 「외국교육기관법」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

- 자. 개별 법률에 따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 등